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3. 7. 12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24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3. 7. 5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채재묵 )

가. 제안이유

- '주민불편살피미'의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 폐지됨에 따라 활동근거가 되는 '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'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

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4월 24일 제정·공포된 조례로, 주민불편살피미의 활동임무, 구성 및 활동기간, 위·해촉, 활동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
- 동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영릉이 자전거 순찰대 440명,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 300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, 매년 운영에 따른 예산 1,000 ~ 1,800 만원을 반영하였으나, 주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,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순찰의 어려움 및 사고 위험의 상존에 따른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영라이너스는 2011년도에, 영릉이 순찰대는 2013년도에 운영을 폐지하였음.
-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120시민불편살피미,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각종 민원신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3년 3월 18일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 폐지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,
- 검토결과 조례의 연혁과 체계, 내용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, 「서울특별시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‘주민불편살피미’의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 폐지됨에 따라 활동근거가 되는 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’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3.21~ 4.10, 20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의견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
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